(건축-001)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현장 외부비계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 청소년 수련원 건축공사				
사고일시	2017년 1월 3일(화) 9:46분경		기상상태	맑음	
소재지	제주도 서귀포시	사고 종류	넘어짐(전도)		
구조물 손실	외부비계	인적피해	부상 3명	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〇)	, 해당없음()	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용도 : 청소년 수련시설

○ 연면적 : 9,471 m²

○ 규모 : 지하 1층/지상 2층

○ 공사기간 : 2015.12~2016.12

2) 사고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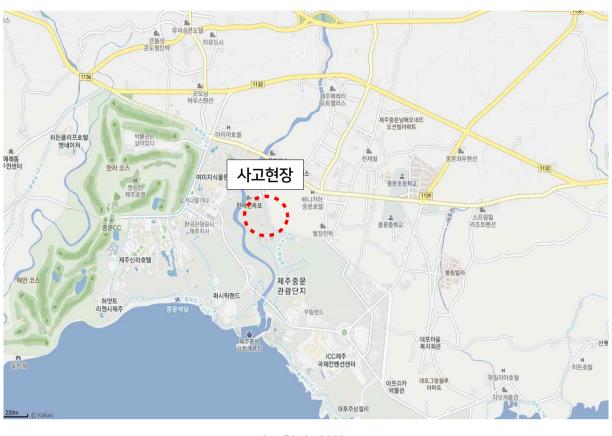
○ 2동 후면부의 1층 외벽 돌붙이기 작업 중 가설 외부비계(연장 약 30m, 높이 6~8m)가 순차적 으로 전도·붕괴되어 작업자 3명 부상

3) 사고원인

○ 외벽 도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 외부비계의 고정대(벽연결재) 일부를 제거한 상태에서 외벽석재를 적치해 둔 돌붙이기 공사용 쌍줄비계 작업발판이 하중으로 작용하여 외부비계가 아래 그림의 A구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전도·붕괴된 사고(추정)

나. 재발방지대책

- 비계 조립 전에 바닥부 지반상태 및 비계의 구조, 강도,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.
- ◎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 부재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상태에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는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,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-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.
-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